



시보는 공무원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선 람	기관장



제35호(호외) 2022. 9. 15.(목)

고 시

광양시 고시 제2022-287호 광양도시관리계획(중등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1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▶발행 : 광양시 ▶편집 : 홍보소통실 (☎797-2323, 행정2713)

광양 도시관리계획(중동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※ 경미한 변경

광양시 중동 1913 일원의 “중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”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, 광양 도시관리계획(중동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사항을 고시하고, 관계도서는 광양시청(도시재생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.

2022년 9월 15일

광 양 시 장

1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다음조서
2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: 게재생략(광양시청 도시재생과 비치)
3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도시재생과(☎061-797-342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1. 교통시설

1)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위 치	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기점	종점				
기정	광로	2	7	50	주간선 도로	3,934	광로1-1호	광로2-6호선	일반 도로	동광양	91.10.12	주차장 129호와 중복결정

2) 주차장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 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129	주차장	완충녹지28호변	4,399	-	4,399	2008.12.12.	광로2-7호, 광장14호, 중도2-123호, 완충녹지28호 지하에 중복결정

2. 공간시설

1) 광장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14	광장	교통광장	중동 광로2-7와 대로 2-2교점	12,600	-	12,600	'86.12.31	지하에 주차장 129호와 중복결정

나.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조서(변경)

1. 용도지역의 계획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
구 분		면적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계		53,015.2	-	53,015.2	100.0	
주거지역	제3종 일반주거지역	33,264.5	-	33,264.5	62.7	
	준주거지역	19,750.7	-	19,750.7	37.3	

2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구 역 명	위 치	면 적 (㎡)			비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-	13	중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중동 1032-1번지 일원	53,015.2	-	53,015.2	2008.12.12.

3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

가. 교통시설

1)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위 치	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기점	종점				
기정	중로	2	123	18	국지 도로	277	광로 2-7호	광로 2-7호	일반 도로		2008.12.12.	주차장 129호와 중복결정
기정	소로	2	654	8.3	국지 도로	31	중로 2-123호	중동 1913번지	일반 도로			
변경	소로	2	654	8.3	국지 도로	31	중동 2-123호	중동 1913번지	일반 도로			선형변경
기정	소로	3	673	7.3	국지 도로	29	완충녹지 28호	중로 2-123호	일반 도로			

■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	비고
소로 2-654	소로 2-654	• 일부구간 선형변경	• 건축배치 변경으로 인한 선형 변경	

2) 주차장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 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129	주차장	완충녹지 28호변	4,399	-	4,399	2008.12.12.	광로2-7호, 광장14호, 중로2-123호, 완충녹지28호 지하에 중복결정

나. 공간시설

1) 녹지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28	녹지	완충녹지	광로2-7호선변	8,864	-	8,864	1991. 10.12	주차장 129호와 중복결정

2) 공원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 (㎡)		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기정	131	공원	어린이 공원	중동1916	1,500	-	1,500	09.11.20

4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: 변경없음

▣ 공동주택(아파트)용지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㎡)	획 지		비 고
			위 치	면적(㎡)	
A1	A1	26,595.2	중동 1912	26,595.2	

▣ 준주거용지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㎡)	획 지		비 고
			위 치	면적(㎡)	
B1	B1	12,814	중동 1913	12,814	

▣ 주차장용지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㎡)	획 지		비 고
			위 치	면적(㎡)	
C1	C1	4,399	지하 주차장	4,399	도로, 녹지, 광장 지하에 중복결정

5. 건축물의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

▣ 공동주택(아파트)용지 : 변경없음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
A1	A1	용 도	- 지정용도 - 아파트 -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, 복리시설 및 간선시설 - 불허용도 -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30% 이하
		용적률	290% 이하
		높이	30층 이하
		배치	- 건축물 전후면에 공공공간 확보 - 건축물간의 벽면선 중첩 배제
		형태	주변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탐상형으로 건축
		색채	외벽의 색채는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로 유도
		건축선	2m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보행자의 안전성, 쾌적성, 편의성 확보

■ 준주거용지 : 변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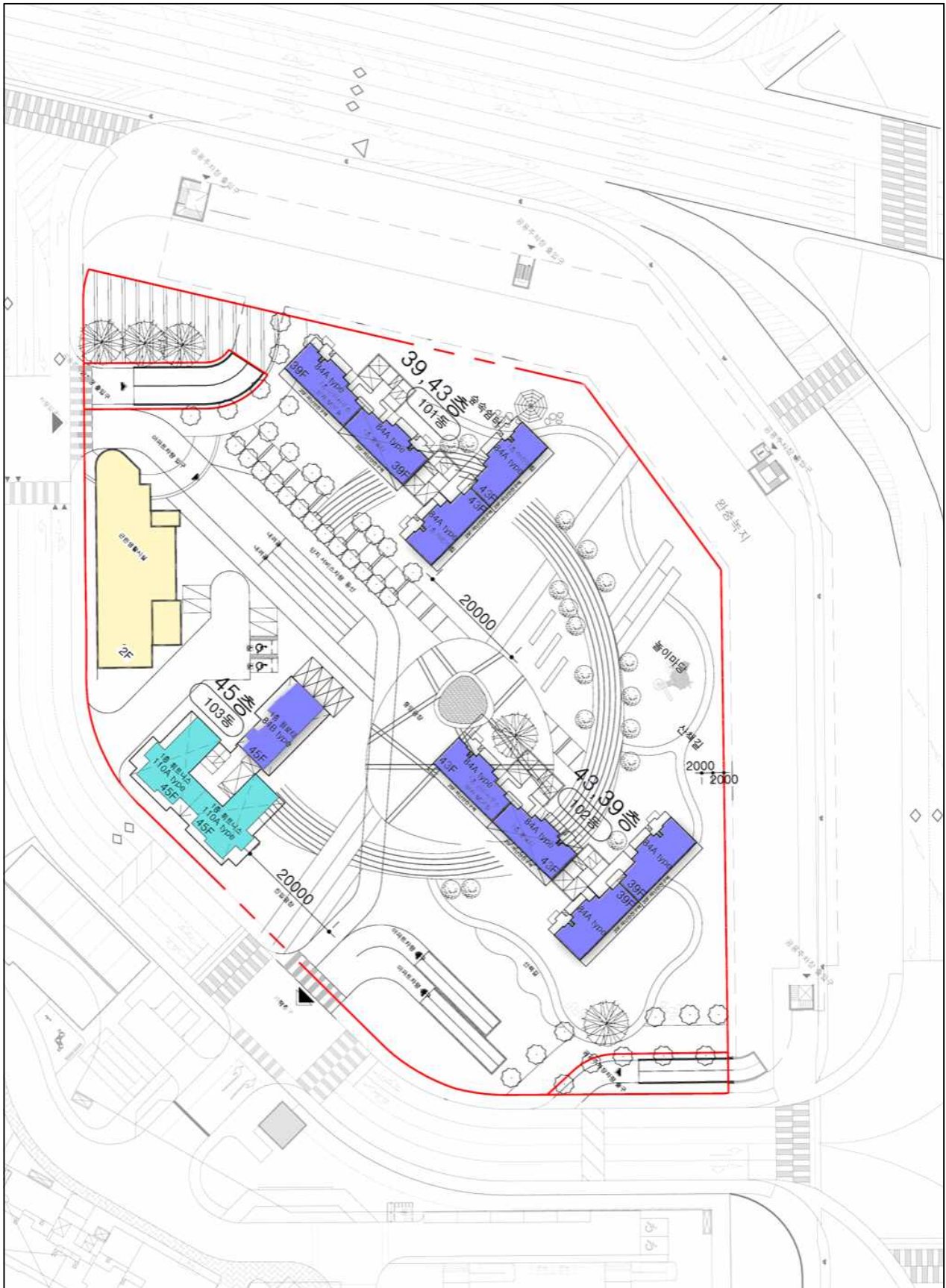
○ 기정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
B1	B1	용 도	• 권장용도 - 제1·2종 근린생활시설, 판매시설, 업무시설 -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• 불허용도 - 시조례 및 학교보건법에서 정하는 불허용도 - 안마시술소, 장례식장 - 공장, 창고시설 -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(주유소제외) -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※ 허용용도 -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• 60% 이하
		용적률	• 480% 이하
		높이	• 45층 이하 (동별 최고층수는 건축물 배치도 참고)
		배치	• <별표1> 배치가이드라인을 따른다.
		형태	• <별표2> 형태 및 외관 가이드라인을 따른다.
		색채	• <별표3> 색채가이드라인을 따른다.
		건축선	• 2m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보행자의 안전성, 쾌적성, 편의성 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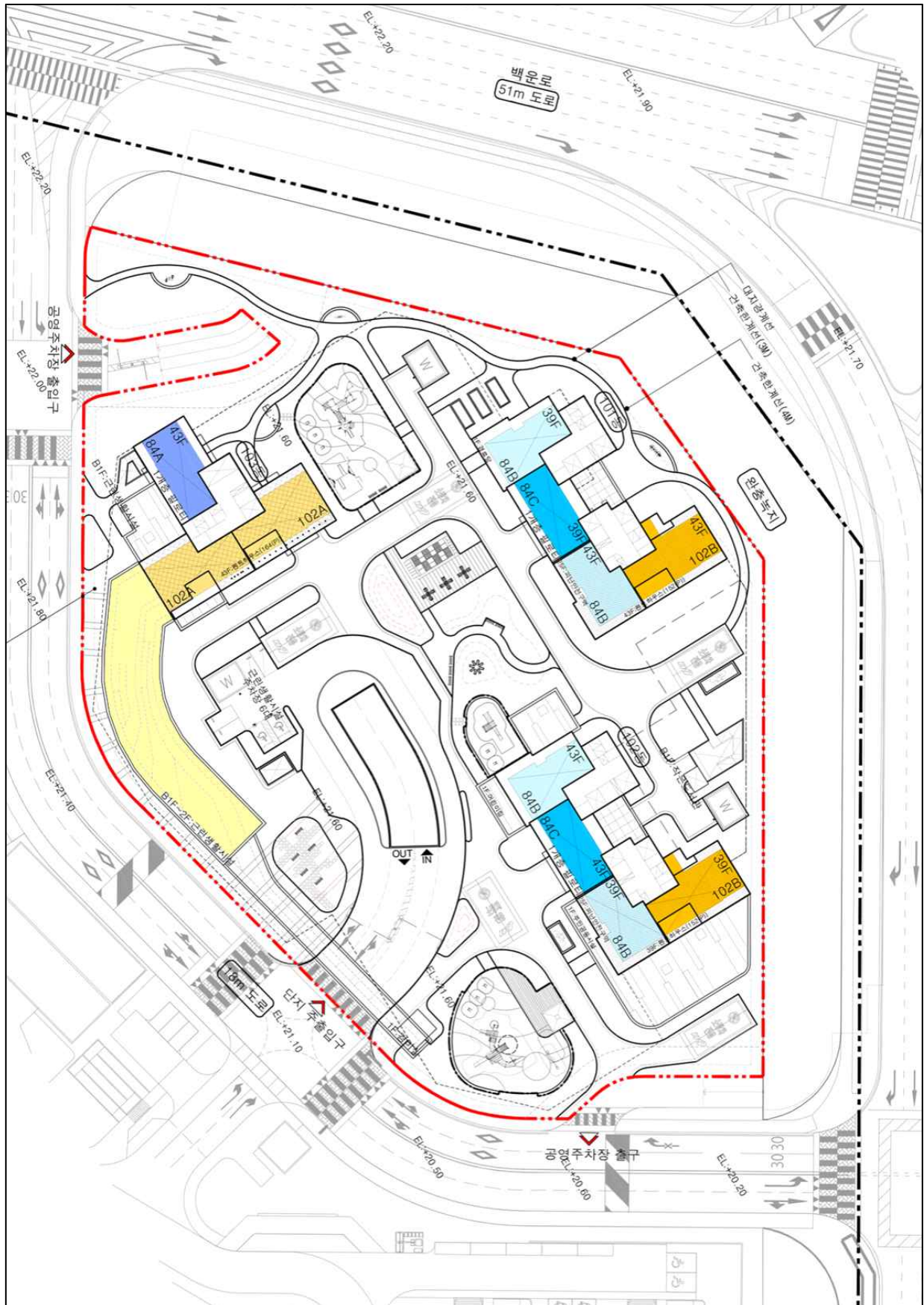
○ 변경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
B1	B1	용 도	• 권장용도 - 제1·2종 근린생활시설, 판매시설, 업무시설 -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• 불허용도 - 시조례 및 학교보건법에서 정하는 불허용도 - 안마시술소, 장례식장 - 공장, 창고시설 -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(주유소제외) -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※ 허용용도 -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• 60% 이하
		용적률	• 480% 이하
		높이	• 43층 이하 (동별 최고층수는 건축물 배치도 참고)
		배치	• <별표1> 배치가이드라인을 따른다.
		형태	• <별표2> 형태 및 외관 가이드라인을 따른다.
		색채	• <별표3> 색채가이드라인을 따른다.
		건축선	• 2m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보행자의 안전성, 쾌적성, 편의성 확보

■ 건축물 배치도(기정)



■ 건축물 배치도(변경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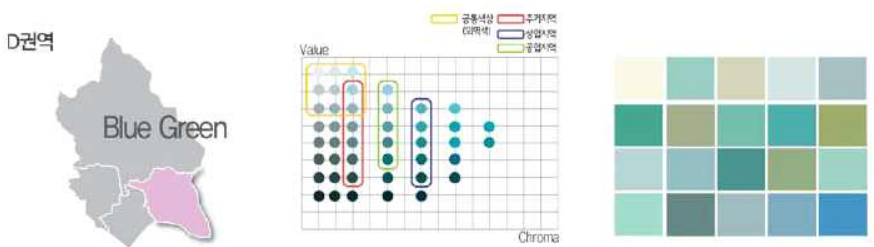
〈별표1〉 배치 가이드라인(변경)

구분	반영사항
배치	기정 • 차폐도가 높은 판상형의 건축물을 지양하고, 대형 건축물의 시각적 위압감을 저감 할 수 있는 다양하면서 동질감 있는 입면으로 구성 • 저층부는 공동시설로 구성하여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며, 커뮤니티 공간의 활성화 유도 • 주변경관의 조망을 고려하여 배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성 • 원경에서의 스카이라인 조화 및 중경에서의 건축물 지붕선 조화, 근경에서의 색채 및 형태가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조성 • 고층 공동주택에 의한 차폐감 완화와 배후경관 조망을 위한 통경축(20m) 확보 • 주요 산림 및 상징경관 조망축의 경우 도로를 중심으로 건축선 후퇴하여 개방감 확보 • 아파트 단지 각각부에 건축한계선으로 지정된 공공조경은 공개공지 개념으로 확보하고 완충녹지 및 보도와 연계하여 휴게공간 조성 • 곡선가각부는 가각이 끝나는 지점과 건축한계선까지 공간에 공공조경을 확보하여 직선 가각부는 건축한계선 가각의 길이를 일정규모 이상 확보 • 외부공관과의 단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지내 조경과 연계된 녹지를 확보
	변경 • 차폐도가 높은 판상형의 건축물을 지양하고, 대형 건축물의 시각적 위압감을 저감 할 수 있는 다양하면서 동질감 있는 입면으로 구성 • 저층부는 공동시설로 구성하여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며, 커뮤니티 공간의 활성화 유도 • 주변경관의 조망을 고려하여 배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성 • 원경에서의 스카이라인 조화 및 중경에서의 건축물 지붕선 조화, 근경에서의 색채 및 형태가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조성 • 고층 공동주택에 의한 차폐감 완화와 배후경관 조망을 위한 통경축(25m 이상) 확보 • 주요 산림 및 상징경관 조망축의 경우 도로를 중심으로 건축선 후퇴하여 개방감 확보 • 아파트 단지 각각부에 건축한계선으로 지정된 공공조경은 공개공지 개념으로 확보하고 완충녹지 및 보도와 연계하여 휴게공간 조성 • 곡선가각부는 가각이 끝나는 지점과 건축한계선까지 공간에 공공조경을 확보하여 직선 가각부는 건축한계선 가각의 길이를 일정규모 이상 확보 • 외부공관과의 단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지내 조경과 연계된 녹지를 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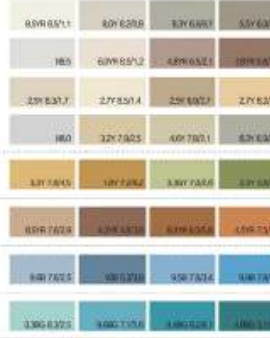
〈별표2〉 형태 및 외관 가이드라인

구분	반영사항
형태 및 외관	- 수직적인 위압감 및 시각적 차폐감이 형성하지 않도록 상층부, 중층부, 저층부로 구분하여 각 부분에 재질, 색채 등으로 입면분절 - 저층부, 중층부, 고층부에 따른 입면 패턴의 규모 차별화로 위압감 저감 권장 3분할 입면구성으로 매스감 저감 - 각 부분간 조화로운 입면계획과 최상부는 재질, 색채, 입면 등 지붕과 동질적인 디자인 적용

〈별표3〉 색채 가이드라인

구분	반영사항
공통가이드라인	광양시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권역별 환경요소에 의한 색채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열색을 지정 - 특정 경관요소를 제회한 색채는 난색계열의 저채도 색상, 또는 밝은 무채색계열 색상을 활용 - 조화와 균형을 어우르는 도시환경 색채구현을 위하여 주조색 계열은 무채색 또는 저채도의 색을 사용 - GY, YR, B, BG 계열색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통일된 경관을 연출  - 권역별 팔레트 내에서 다양한 톤 변화를 통한 디자인 도시를 연출
유형별 가이드라인	건축물 - 주거용지 내 건축물의 경우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 - 건축물의 높이와 조망거리, 인지성을 고려하여 저층부, 중층부, 고층부에 대한 색채 구성 권장 - 건축물 위압감 저감을 위해 저층부에서 고층부로 갈수록 명도는 밝아지고 채도는 낮아지는 색채계획 연출 권장 - 준초고층 건축물이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색채 적용 권장 - 입면 색채 계획시 다양성을 인정하되 계열색(지정된 범위) 내에서 디자인 하고 주택의 지붕은 공통 적용하여 색채의 통일감으로 일관성을 유지 - 과시적 장식적 요소의 브랜드 색채는 지양 - 수직적인 배색을 활용한 상승적 이미지를 부여 - 지붕 : 원색제한, Gray계열 - 브랜드+마을명 혼합표기 사용 - 입면 - 외벽색 : YR, Y계열(명도:5~8.5, 채도:2.5 이하) - 강조색 : BG, B계열(명도:6~8, 채도:5이하)

- 측벽 - 수퍼그래픽 지양
 - 브랜드 마크 : 15%이내 사용
 - 글자색 : 명도1~2.5, 채도:1.5이하
 - 표기요소 : 입체문자 권장

색상 및 재료	구역구분	색채예시
• 색채범위  • 권장재료 	외벽색 (공통) 강조색 (천연도스킨) 강조색 (천연도스킨) 강조색 (합판도스킨) 강조색 (교목문화물집도스킨)	

※ 외벽색은 차이를 준수하여 구역별 공통사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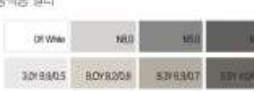
- 공공시설물은 보행경관에서의 주변녹음과 건축물 색채의 배경이 되는 요소로 주변환경과의 조화되는 난색계열 저채도의 색을 사용

※〈광양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〉 준용

구분	색채범위	색채예시
공통	 • 함색사용제한 • 색상 : YR • 명도 : 2~4.5 • 채도 : 3이하, 또는 무채색	• N계열 사용시  • YR계열 사용시 
권장재료	금속  목재  유리  석재 	

- 건축물, 시설물 등과 연계하여 질서유지가 가능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적용
- 고채도,高明도의 색상은 포인트 요소로만 사용하고 배경색의 통일로 주변 요소와의 연속성있는 계획 필요
- 건축물의 의장요소와의 대비색은 피하고, 차양막 설치는 건축물별 색채범위 내 통일되게 계획

※〈광양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〉 준용

구분	색채범위	색채예시
공통	 • 함색사용제한 • 색상 : Y, YR, N계열 ※ 강조색 : 전체 • 명도 : 2.50이상 • 채도 : 5이하, 또는 무채색	• 공통적용 예시  • 하계사용 예시 

※ 상업시설 특성고려 강조색범위 제한 없음
단, 고채도의 색은 상징부위 15%이내 적용

▣ 주차장용지 : 변경없음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
C1	C1	용 도	- 지정용도 -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(관리사무소, 휴게소 및 공중변소에 한함) - 불허용도 -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• 10% 이하
		용적률	• 10% 이하
		높이	• 1층 이하
		배치	• 도면참조
		형태	•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유도
		색채	• 외벽의 색채는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로 유도
		건축선	-

6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▣ 교통처리계획

도면 번호	위 치	계획내용	비 고
A1, B1	A1, B1	• 교차로 일정구간내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	세부사항 도면참조

▣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

도면 번호	위 치	계획내용	비 고
A1, B1	A1, B1	2m 건축한계선 지정을 통해 전면공지 확보 - 소공원형 공공조경은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과 주차장 진·출입 도로 사이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. ※ 소공원형 공공조경의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. -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가목 소공원에 준하여 조성하여 하며, -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. (단, 입주민의 차량 및 보행을 위한 통로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.)	세부사항 도면참조

▣ 경관에 관한 계획

도면 번호	위 치	계획내용	비 고
B1	B1	<별표4> 오픈스페이스 가이드라인을 따른다. <별표5>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을 따른다. <별표6>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따른다. <별표7>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따른다.	

〈별표4〉 오픈스페이스 가이드라인

구분	반영사항
배치	• 완충녹지는 도로쪽으로 치우친 형태로 마운딩하여 주거지에서의 녹지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• 아파트부지 내 조경부지 및 경계부 녹지 통합(경계부를 최소화하고 물리적 구조물 설치를 제한하여 인접녹지와 통합하여 연결녹지 확장) • 주요 접근로와 통행 동선은 계단이나 급경사를 피하여 평탄하게 계획 • 지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하고 입체적인 경관 연출 • 어린이 공원과 근린공원은 개방성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성
시설물	• 공원에 테마를 설정하여 시설물 이미지를 통합화하고 친환경 재료를 사용 • 공공시설물은 보행자의 안정된 시각 환경 조성을 위해 원색을 지양하고 무채색 및 자연소재 색 적용 • 주변의 자연요소와 통합된 시설로 조성하여 시설물의 기능성을 만족하는 동시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정감있는 시설물로 조성
식재	• 완충녹지 주변을 교목성상의 수종으로 지하고가 높고, 수관폭이 넓은 수목을 식재 • 낙엽수와 상록수의 혼용을 통한 계절감 부여와 겨울철 녹시율 증대
패턴 및 색채	• 친환경 투수성 포장재와 자연 재료 사용 • 공간적 구분과 시각적 흥미를 위하여 포장 구역과 녹지 구역을 적절히 혼용 • 자극적인 색채와 과장된 패턴 지양, 패턴의 일부요소를 놀이요소나 안내시설로 활용 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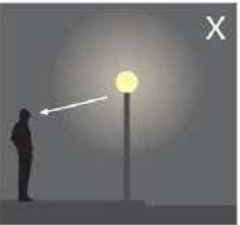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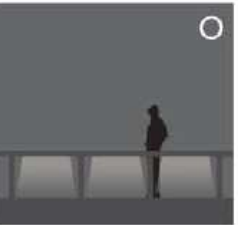
〈별표5〉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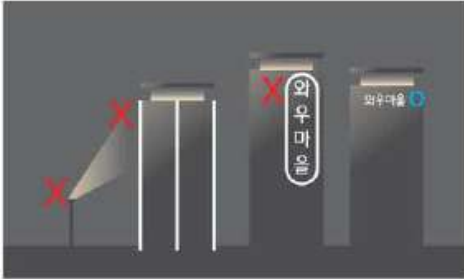
구분		반영사항
배치 및 설치		- 보행동선과 주변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용자의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할 것을 권장 - 통합형 시설물을 사용하여 정돈된 가로환경 조성
형태 및 외관		- 각공간의 차별화된 상징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일관성 있는 설치기준과 간결한 디자인 적용 - 편의 시설물은 사람의 신체와 접촉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모든 부위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안전마감을 적용할 것을 권장
색채 및 재질		공공시설물 색채 및 재질의 세부적인 사항은 색채계획에 따름
유형별 가이드라인	가로등	-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고 모듈화 개념을 적용하여 기능의 통합가능한 구조로 디자인 설계 - 고채도 색채를 지양하며 주변 자연환경과 건축물과 조화성을 고려한 색채로 선정 
	벤치	동선이 집중되고 머무르는 곳으로서 편의성, 조화성, 안전성 고려 
	휴지통	- 재활용 분리수거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고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적정거리 유지 - 쓰레기 투척 행위 방지를 위하여 투입구 윗면을 개방하지 않도록 함 
	시각매체	정보의 업데이트 및 유지·관리가 용이하도록 모듈화하여 디자인 설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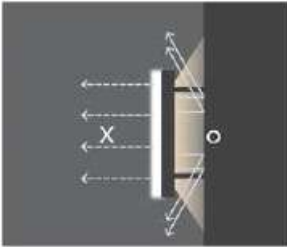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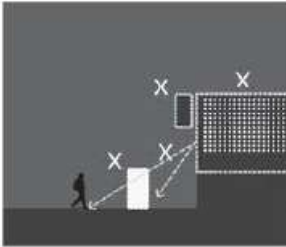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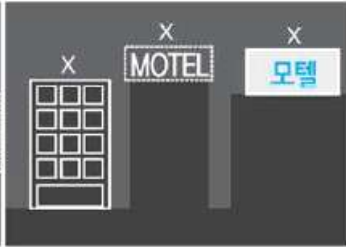
<별표6>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

구분	반영사항
설치 및 배치	• 설치수량은 1개 업소 당 1개소 설치를 권장 • 간판의 설치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제작할 것을 권장 • 광고물 점유면적을 최소화하여 건축미가 돋보일 수 있도록 계획 • 정보 내용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계획
형태 및 크기	• 옥외광고물의 과잉디자인을 규제하고 조화성과 연속성있는 가로경관을 조성 • 간판을 설치하는 건축물과 주변환경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입체형과 판류형, 가로형과 세로형 중 선택하여 디자인할 것을 권장(단, 벽면이 모두 유리로 된 건물에는 판류형 설치 지양)
색채 및 재료	• 간판이 설치되는 입면 재료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색채 및 재료를 선정하여 적용할 것을 권장 • 간판의 재료는 친환경적이고 내구성이 있는 재료의 사용을 권장 • 광고물의 바탕색은 주변 건물 및 광고물과 어울리지 않는 색상 및 원색 사용을 금지
표기요소	• 간판이 설치되는 건축물 및 업소의 성격 등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서체를 선택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 • 광고물 표기는 상호 및 로고를 중심으로 간결하게 표기
유형별 가이드라인	점두 독립형 • 점두독립형 간판은 보행자의 시인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3층 이하에 설치할 것을 권장 • 동일층의 간판은 좌우 1줄로 표시하여야 하며, 상하 2줄의 표시를 지양 •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와 앞·뒤 도로에 접한 업소는 가로형 간판 1개를 추가 설치 가능 • 입체형 간판을 설치할 경우, 같은 층 간판들과 일렬로 정렬하여 표시할 것을 권장 • 판류형 간판은 일정한 구격으로 같은 층 간판의 위·아래 높이를 일치시킬 것을 권장 • 가로크기는 당해 업소 가로(전면)범위의 80%를 넘지 않도록 디자인할 것을 권장 [점두독립형 간판의 설치 위치]

〈별표7〉 야간경관 가이드라인

구분	반영사항
공통가이드라인	• 오픈스페이스와 연계하여 주민의 안정성과 방법성 확보 • 주거환경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명은 단순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조명 연출 • 실내계단층에서 새어 나오는 불빛을 활용하여 연출, 상부층에는 LED조명의 장식성 강한 조명연출을 지양하여 과도하지 않은 경관조명이 되도록 함 • 도로조명에 의해 저층 주거지의 빛이 침투하지 않도록 계획 • 주거지, 산책로 등 어두운 공간에 접한 곳은 전반확산조명을 지양하여 눈부심 최소화  눈의 피로를 줄이고 쾌적한 경관 형성을 위한 안정된 빛 간접조명 위주의 편안하고 여느한 조명 연출  경관조명 Up-Light 조명지양 새어나오는 불빛 활용 상층부 조명 과도함 지양 X  저층주거지 내부로 침투되는 빛 금지 O  도로조명에 의해 누수되는 빛이 차단되는 것을 권장 X  전반확산조명을 지양하여 눈부심을 최소화 O  오픈의 간접조명을 활용 야간 보행환경 개선
유형별 가이드라인	건축물 • 원색계열이나 브랜드 로고컬러의 색상 사용 지양, 가급적 백색 계열의 광원 사용 권장 • 고휘도의 선조명을 금지하며, 조명기구가 노출되어 건축물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계획 • 건설사 명칭, 로고, 브랜드의 사용은 가급적 지양하며, 발광조명체는 간접조명 방식으로 하고 판류형이 아닌 입체문자형 설치 권장 • 옥탑부만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도록 하고, 옥탑부는 간접조명방식을 권장 • 경관조명은 Up-Light 조명을 지양하고, 새어나오는 불빛 활용 • 상층부의 노출도를 고려하여 간접조명 등 경관조명 최소화 • 지정된 단지명칭 사용 및 입체문자 조명 권장 • 야간경관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• 21층 이상의 건축물 표면기준휘도와 옥탑부 휘도의 차이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함 • 눈의 피로를 줄이고 쾌적한 경관 형성을 위한 안정된 빛을 활용

		 경관조명 Up-Light 조명자양 새어나오는 불빛 활용 상층부 LED조명 연출 등 과도함 자양  지정된 간접명칭 사용 및 입체문자 조명 권장 옥탑부 간접조명 방식 채택 라인LED 조명 금지														
		<table><tr><td rowspan="3">경관요소</td><td colspan="2">건축물</td><td rowspan="3">이치</td><td rowspan="3">빛의 강약</td></tr><tr><td>휘도(cd/m²)</td><td>색온도(K)</td></tr><tr><td>평균(최대)</td><td>최저 최고</td></tr><tr><td>주거지역</td><td>10-20(50)</td><td>2,200 - 4,200</td><td>부드러운</td><td>중</td></tr></table>	경관요소	건축물		이치	빛의 강약	휘도(cd/m ²)	색온도(K)	평균(최대)	최저 최고	주거지역	10-20(50)	2,200 - 4,200	부드러운	중
경관요소	건축물			이치	빛의 강약											
	휘도(cd/m ²)	색온도(K)														
	평균(최대)	최저 최고														
주거지역	10-20(50)	2,200 - 4,200	부드러운	중												
보행자 가로	- 가로의 유형에 따른 빛의 위계를 설정하여 경관형성 관리 - 가로의 조도는 설치구역 및 설치장소와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음영의 밸런스가 조화되도록 설치 - 적절한 조도를 얻을 수 있도록 등주의 높이 및 등구의 배광과 관련하여 결정하도록 함															
	유형	조명높이	수평조도 수직면	조명방식	색온도											
	일반가로	4~6m	5~10lx 1~2lx	컷오프형	2650~3200K											
	상점가로	4~6m	10~20lx 2~4lx	컷오프형	2650~4000K											
	주택가로	3.5~5m	3~5lx 0.5~1lx	컷오프형	2650~3200K											
공원 및 녹지	- 안전한 보행과 휴식을 배려하여 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 - 수목조명은 점등시간을 22시까지 제한하여 연출 - 공원의 공간감을 인지할 수 있는 조명연출로 생동감 있는 야간경관 형성 - 다양한 조명을 활용하여 다채로운 체험유도 및 안전성 확보 - 주요 조망점, 구릉지 등의 조망점에서 컷오프배광을 적용															
	 주요조망점 구릉지, 산지경관이 조망되는 지역에 대해서 컷오프배광을 적용  벤치및 볼라드 등의 시설물에 간접조명 활용  산책로와 볼라드 등 조명이 통합된 시설물로 안전성을 위한 빛 제공  일부마네이션 조명을 활용한 수목 경관연출															

	옥외광고물	•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주거나 주변으로 빛이 반사되는 과도한 휘도의 광고물 지양 • 현란하고 빠른 빛의 움직임(색상 및 밝기 변화, 반복점멸 등)을 지양 • 건축물 입면을 과도하게 넓은 면적으로 점유하는 것을 지양 • 광원이 외부로 직접 노출된 점조명, 선조명의 사용 지양 • 간접조명방식을 채택하고, 덮개나 차단막 등의 보조장치 부착 • 옥탑부만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휘도 차이가 큰 조명을 설치 지양    옥외광고물 광원노출 금지 덮개 및 차단막 등 보조장치 설치 장식성 LED조명 설치지양 시각적 현란함 및 움직임 금지 바닥투사 동적 조명방식 금지 보행로 설치 발광 광고물 금지 옥탑부 과도한 LED 조명 설치 지양 옥탑부의 과도한 휘도차 지양 건축물 전면 라인 조명 지양																						
	오픈스페이스	• 안전한 보행과 휴식을 배려하여 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 • 수목조명은 점등시간을 22시까지 제한하여 연출 • 공원의 공간감을 인지할 수 있는 조명연출로 생동감있는 야간경관 형성 • 다양한 조명을 활용하여 다채로운 체험유도 및 안전성 확보   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3%;">경관요소</th><th style="width: 33%;">장소</th><th style="width: 33%;">추천조도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건물</td><td>입구</td><td>30-40-60</td></tr> <tr> <td>통로</td><td>30-40-60</td></tr> <tr> <td rowspan="2">공원</td><td>전반</td><td>6-10-15</td></tr> <tr> <td>주된장소</td><td>15-20-30</td></tr> <tr> <td rowspan="4">정원</td><td>길, 집박, 층계</td><td>30-40-60</td></tr> <tr> <td>나무, 꽃밭, 석조공원</td><td>30-40-60</td></tr> <tr> <td>배경-관목, 나무, 담장</td><td>6-10-15</td></tr> <tr> <td>전반조명</td><td>15-20-30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경관요소	장소	추천조도	건물	입구	30-40-60	통로	30-40-60	공원	전반	6-10-15	주된장소	15-20-30	정원	길, 집박, 층계	30-40-60	나무, 꽃밭, 석조공원	30-40-60	배경-관목, 나무, 담장	6-10-15	전반조명	15-20-30
경관요소	장소	추천조도																						
건물	입구	30-40-60																						
	통로	30-40-60																						
공원	전반	6-10-15																						
	주된장소	15-20-30																						
정원	길, 집박, 층계	30-40-60																						
	나무, 꽃밭, 석조공원	30-40-60																						
	배경-관목, 나무, 담장	6-10-15																						
	전반조명	15-20-30																						